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

1. 목 적

-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련 안정성 유지 및 적정 의료인력 수급 관리

2. 근 거 (별첨 참조)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제7항
 - 전공의 수련기간 관련 특례
-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전공의 임용, 수료증 발급,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특례
-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 전공의 모집 및 지원 관련 특례

3. 적용대상 : 수련 복귀자 및 9월 모집자

- (수련 복귀자) '24년 3월 기준 전공의 임용대상자(1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24년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하여 8.31.에 근무** 중에 있는 자
 - * 병원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출근하여 수련·진료에 임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부정기 출근자, 장기휴가 및 휴직자 등 실제 근무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는 병원장 판단 하에 제외
- (9월 모집자) '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을 통해 9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자

4. 특례 적용사항

1 수련 복귀자 (~'24. 8월까지 복귀하여 근무 중인 자)

1 수련에 복귀한 인턴은 수련 공백기간 만큼 수련기간 단축

현행	특례 필요사항	특례사항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을 위해 1년 수련 필요	근무지 이탈에 따라 1년의 수련기간 미충족	수련기간을 단축 하여 인턴과정 수료로 인정

- **(현행)**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을 위해 1년의 수련과정 이수 필요
 - * 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 제1항(인턴 수련과정 1년)
- **(특례필요사항)** 그 간 근무지 이탈에 따른 장기 수련공백으로 정해진 수련기간(1년)을 충족하지 못한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 불가
 - 또한, 현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도 인턴 수련기간이었던 2월에 수련공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턴과정 미이수로 레지던트 진입 불가
 - * 상당수 전공의들이 2.19.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2.19~2.29.동안 공백
- **(특례사항)** 8월 이내 수련과정에 복귀하여 이후 수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경우, 그 간 공백기간 만큼은 수련기간을 단축 적용하여 인턴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 '24년 3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25년 2월 말까지 수련, ▲ '23년 9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24년 8월 말까지 수련해야 함
 - 현 레지던트 1년차에게도 인턴 수련기간(2월) 동안의 수련공백기간 만큼 수련기간을 단축 적용하여 정상 수료로 인정
 - 다만, 수련병원에서는 수련기간이 단축되어도 필수 4 + 선택2 과목을 반드시 이수시켜야 하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핵심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료 조치
 - * 인턴이 필수진료과 수련 중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투입한 경우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방안, '24.2.20.)
 - ** 필요시 필수과목 이수, 핵심역량 획득 등을 위한 별도교육(인터넷 강의 포함) 가능

<< 복귀시점에 따른 수련기간 예시 >>

복귀 시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특례 단축
정상 수련													-
4월													최대 1개월
5월													최대 2개월
6월													최대 3개월
7월													최대 4개월
8월													최대 5개월
9월													최대 6개월

② 수련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추가수련 3개월 면제

현행	특례 필요사항	특례사항
추가수련 포함 5.31.까지 수련이 완료 시 전공의 수료	장기 미복귀 레지던트는 5.31.까지(기간 3개월) 추가수련 완료 불가능	2월 공백 전체 + 3~8월 공백 중 3개월 면제 → 추가수련 3개월 이내로 단축

- **(현행)** 수련기간 중 발생한 수련공백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을 실시하여야 하며(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제6항), 추가수련을 포함한 수련이 5월 31일 까지 이수되어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추가수련은 매 수련연도 발생한 부분을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받아야 함(수련규칙 표준안 제18조제7항)

- **(특례필요사항)** 장기 수련공백으로 3개월을 초과한 추가수련이 필요한 레지던트는 수료예정 연도의 5월 31일까지 수련을 완료하지 못하여 예정된 연도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불가능

- **(특례사항)** 8월 이내 수련과정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24년 2월 동안의 수련공백 전체와 ▲3~8월(6개월) 동안의 수련공백 중 3개월의 추가수련 면제

* (예시) 2.19. 이탈 후 7.31. 복귀 전공의 → 2월의 공백 11일 면제, 3~7월의 5개월 공백기간 중 3개월을 면제 → 추가수련 2개월

**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 중인 레지던트도 동일 기준 적용

- 수련기간이 단축되어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② 9월 모집자 (하반기 모집을 통해 '24년 9월 1일부터 수련개시한 자)

① 하반기 모집 제한 완화 (既 시행)

현행	특례 필요사항	특례사항
하반기 모집의 경우 ① 인턴은 선발 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원 불가, ② 레지던트 모집과목 제한 ③ 사직 레지던트는 1년 내 지원 불가	① 군미필 인턴은 병역 의무로 수련 불안정 ② 일부 과목만 모집 가능 ③ 사직 레지던트는 모집에 응시 불가	'24년 9월 모집에 한해서는 모집 및 지원 제한요건 미적용

- (현행) 하반기 모집자의 경우 ▲인턴의 경우 선발되어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육성지원과목만 모집 가능하고, ▲상급연차는 사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가능

*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보건복지부)의 하반기 모집 지원대상 규정

- (특례필요사항)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군미필 인턴은 수련 도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레지던트는 모집이 일부 과목만 가능하고, ▲사직한 상급연차 레지던트는 하반기 모집 지원이 불가

- (특례사항) '24년도 9월 모집자에 한하여 ▲인턴 모집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레지던트*의 경우 모집과목 제한 및 사직 후 1년 경과 필요 요건 미적용

*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신청하되, 그 전까지는 입영유예

** 동 모집과정 지원한 자는 '24.2월 동안의 수련공백 면제, 승급가능 조치

② '24년 9월 모집자는 당해 1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

현행	특례 필요사항	특례사항
매년 1월 전공의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대상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9월 모집자는 당해 전공의 이수예정자 미포함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불가	'24년도 9월 응시자에 한하여 이수예정자 명단에 포함

- (현행)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월 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응시자는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당해 5월 31일까지 수료가능자)가 필요*

* 전문의 수련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 (특례필요사항) 9월 모집자의 경우 당해 5월 31일 이내 수료 가능자가 아니므로 다음 해 1월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수련 이수 후 6개월이 지나야 전문의 자격 취득 가능

- (특례사항) '24년도 9월 모집자에 대해서는 8월 31일 수료예정 일지라도 당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당해 이수 예정자 명단 작성 시 포함

* 동 특례 적용 이후 수련 도중 사직할 경우, 특례 미적용

<< 입영 관련사항 안내 (국방부·병무청) >>

- ① 수련에 복귀한 인턴의 경우, 복귀 후 수련기관에서 통보 시 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즉시 편입 조치
- ② 수련에 복귀한 레지던트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상태 유지
- ③ 9월 모집 인턴의 경우, 희망시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 ④ 9월 모집 레지던트의 경우, 입영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

*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영 (병역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5. 행정사항

- 수련병원은 8.31. 기준 특례적용 대상자를 확정하여 수평위 사무국에 제출(~9.20.까지)

* 메일주소 : nho@kha.or.kr, 문의 : 02-705-927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 제7항**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수련기간)**

- ⑦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전문의 수련규정 제18조의2(특례)**

-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Ⅲ. 전공의 모집 및 선발**

7. 전공의 모집 관련 특례 조치
 - 의료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공의 모집 시기 및 과목, 지원자격 및 대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